
2026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강화군
(감사법무담당관)

요 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목 표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현

전 략

- ① 적극행정 제도 고도화 및 실행체계 강화
- ②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실행력 강화
- ③ 참여·보상 기반 적극행정 문화 정착
- ④ 군민 체감 중심 적극행정 확산
- ⑤ 소극행정 예방 및 책임행정 강화

추진과제

적극행정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 과정 중심 적극행정 참여 유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 사전컨설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및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 군민 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 적극행정 공감 형성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점검 강화

□ 2026년 달라지는 점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으로 신속한 현안 해결 지원 강화
- 소송지원 규칙 시행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보호·참여 확대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및 군민참여 확대로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전환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4
1. 추진배경	4
2. 2025년 주요 추진성과	5
3. 평가 및 환류	7
II. 2026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8
1. 2026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SWOT 분석)	8
2. 2026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8
III. 적극행정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10
1.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10
2. 적극행정 제도 운영 기반 강화	11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1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11
2. 과정 중심 적극행정 참여 유도	14
3.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15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7
1.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17
2. 사전컨설팅 활성화	19
3.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및 징계 등 면제	21
V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23
1.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23
2. 군민 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24
3. 적극행정 공감 형성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	24
VI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25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엄정 조치	26
2. 소극행정 점검 강화	27
VIII. 향후 계획	28

2026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 ❖ 「2026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026. 4월)을 반영하여
‘2026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후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
-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강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6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6. 4.)

□ 추진배경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 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유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등 참여 중심 적극행정 문화 확산 필요
-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면책 및 소송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 추진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2 2025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 활성화

- 2025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5. 6.)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책임관) 감사법무담당관
 - (협업부서) 총무과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 운영: 감사법무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및 우수공무원 11명 선정

결 과	우수사례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최우수	하점 목숙천 수질오염사고 적극 대응	2명	팀별 포상금 (400~1,000천원) + 인사상 우대 + 표창
우 수 (2건)	어르신 무상택시 시행	2명	
	강화군민을 위한 해상교통 서비스 대폭 개선	2명	
장 려 (2건)	인지건강센터 찾아가는 "홈스쿨링" 운영	2명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던 땅. 적극행정으로 토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다!	3명	

※ 인사상 우대: 성과등급 최고등급 또는 근평 실적가점 또는 희망전보 또는 특별휴가 중 택 1

- 전년 대비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2024년	2025년
인 원	4명	11명
인사상 우대 종류	성과등급 최고 등급, 근평가점, 특별휴가 택 1	특별 승급, 성과등급 최고 등급, 근평가점, 희망부서 전보, 교육훈련 우선선발, 특별휴가 중 택 1
표창 수여	상장 수여	표창 수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관련 의견수렴(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5. 8. 11.(월) ~ 12.(화) [2일간]
- (조사대상) 강화군 소속 전 직원
- (조사방법) 새울행정시스템 설문조사 메뉴 활용
- (조사내용) 파격적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기준 등

□ 적극행정 교육 실시

- 적극행정 법제 교육
 - 교육일시: 2025. 9. 12.(금) 13:30 ~ 15:30
 - 교육강사: 진정용 서기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교육
 - 교육일시: 2025. 11. 12.(수) 15:00~17:00
 - 교육강사: 하수희(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추진
 - 총 467명 이수(이수율 59.87%)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소극행정 혁파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3회

연번	신청 부서	신청 내용	비 고 (처리결과)
1	환경위생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관련	기각 (의견제시)
2	산림공원과	도시계획시설(공원) 확정측량 일반입찰 추진 가능 여부	기각 (의견제시)
3	하수하천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명의이전 사업장 사용 관련	기각 (의견제시)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2건, 176백만원)
- 사전컨설팅 홍보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처리 현황
 - 접수건수: 50건(소극행정 처리 17건 / 담당 부서 이관 33건)

3 평가 및 환류

□ 적극행정 참여 및 활용 확대 필요

- 현안 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용 확대 필요
- 의사결정 부담이 큰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과 연계 추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강화 필요

-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 확대
- 우수사례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군민 체감도 향상

□ 자체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및 내년도 실행계획에 반영
- 소극행정 신고는 원인분석 후 제도개선,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과 연계

II

2026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026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SWOT 분석)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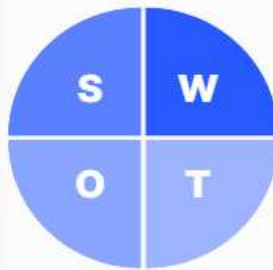
SWOT 분석

Strengths (강점)

-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 선제 구축
- 사전컨설팅 및 면책 운영 경험 축적
- 소송지원 규칙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Opportunities (기회)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정책 확대



Weaknesses (약점)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용 저조
- 적극행정 참여 분위기의 조직 전반 확산 필요

Threats (위협)

-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징계 부담
- 행정환경 변화 및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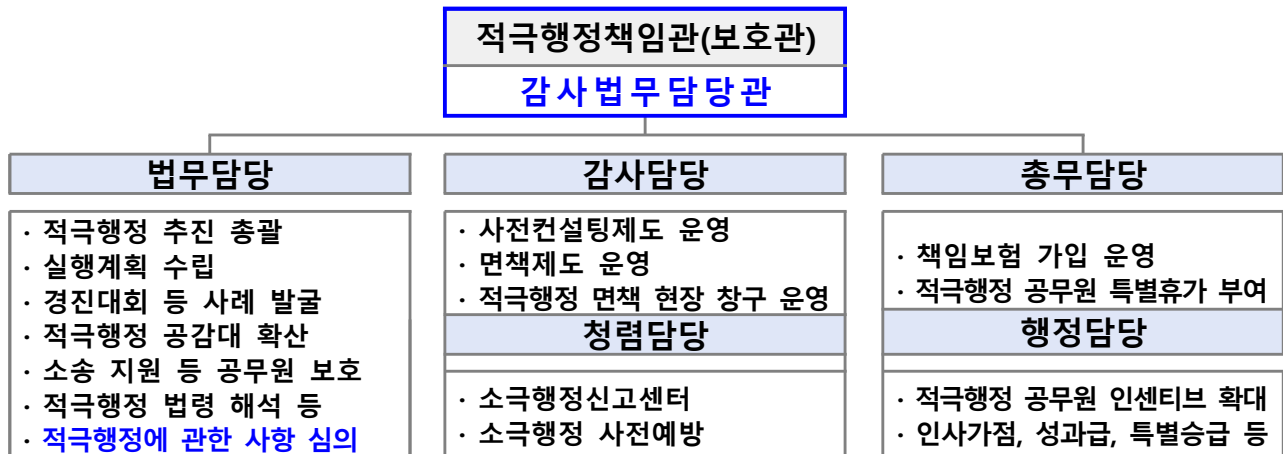
□ 장애요인 극복방안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용 저조 → 독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 조직 전반 적극행정 문화 확산 필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2

2026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 추진체계도



□ 적극행정 추진전략

목 표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현

추진 전략

- ① 적극행정 제도 고도화 및 실행체계 강화
- ②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실행력 강화
- ③ 참여·보상 기반 적극행정 문화 정착
- ④ 군민 체감 중심 적극행정 확산
- ⑤ 소극행정 예방 및 책임행정 강화

2026년 추진과제

적극행정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 과정 중심 적극행정 참여 유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 사전컨설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및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 군민 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 적극행정 공감 형성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Ⅲ

적극행정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1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강화

◆ 근거 규정: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1조의3

○ 구 성: 강화군 인사위원회가 대행

⇒ (기존) 인사위원회 대행 → (개선) 독립 위원회 발족 (2026. 8.)

○ 위원회 별도 구성으로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 신속성 확보

※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합동회의 개최

○ 회의시기

- 정기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수시회의: 군민 생활에 영향이 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 심의·의결사항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③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 관련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위원회에 사후 추인을 요청한 사항
- 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⑥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⑦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 ⑧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관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항
- ⑨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제도 운영 기반 강화

-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근거 마련
- 감사법무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추진 상황 점검 및 환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행계획의 이행력 극대화
-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및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정비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지속 보완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 근거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 선발개요

- 선발시기: 연 1회(11월)
- 선발규모: 우수사례 6건(우수공무원 12명 이내) 확대

<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목표 >

총 규모	최우수	우수	장려
6건(12명)	1건(2명)	2건(4명)	3건(6명)
6,800천원	1,400천원	1,200천원	1,000천원

2025년 대비 포상금 3,800천원 증액^{126%} 증액 & 선발규모 1건(2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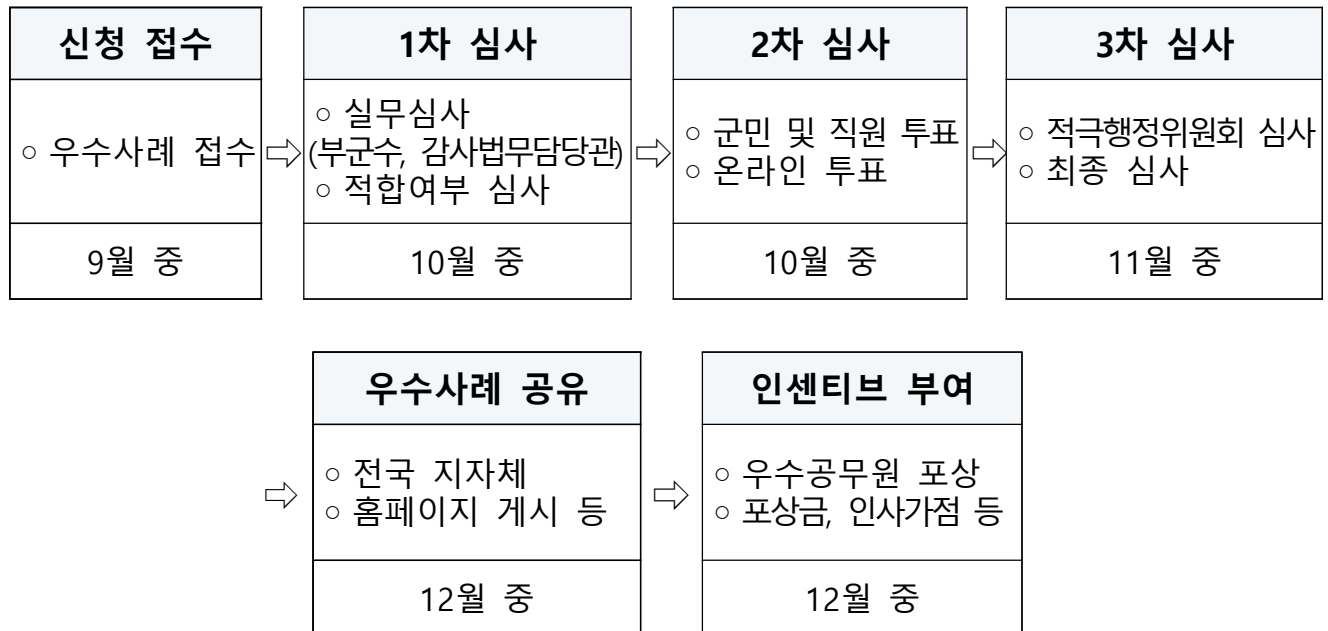
- (대 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선발(사전컨설팅, 소극행정 등)

○ (선발기준)

- 적극적·도전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자
- 장기 미해결 과제, 갈등 현안 사항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자
- 성과창출에 실패하였더라도 관행을 탈피했거나,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사람

	2025년도 계획	2026년도 계획
인 원	10명	12명 이내
규 모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포상금	1,000천원~400천원	1,400천원~1,000천원

□ 선발절차



※ 2차 심사 시, 군민 투표 결과 반영 비율 향상 및 군민의 적극행정 추천사례 심사로 군민 소통 강화

□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내용
군민 체감도	40	- 군민 편익증진, 불편해소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
적극성·창의성 ·전문성	30	- 과제의 적극적인 이해와 조정 및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 개선 노력 정도 -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 해결, 전문지식·경험 등 활용 정도
중요도·난이도	20	- 해당 과제가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
확산 가능성	10	- 타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개요 강화

- (방 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 포상금 + 표창 3종 지급**으로 사기 진작 및 적극행정 유인 강화
- (목 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포상금 인상으로, **파격적 인센티브부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

⇒ 일 잘하는 공무원이 확실한 우대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확산 및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의 동기 부여

< 2026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12명	12명(100%)	-

* 파격적 인센티브: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3일 이상, 포상금 50만원 이상 등

○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1종 부여+포상금 지급+군수 표창 수여

우대등급	포상금(건당)	표창	점수대별 인센티브 유형(안) 택 1
최우수	1,400천원	군수 표창 수여 * 인사기록카드 상훈정보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수상내역 기록	특별승진(심사점수 98점 이상)
			특별승급(심사점수 95점 이상)
			성과급 최고등급
			근평 실적가점(0.4점)
우수	1,200천원		교육훈련 우선선발
			특별휴가(3일)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장려	1,000천원		희망부서 전보
			근평 실적가점(0.2점)
			특별휴가(2일)
			특별휴가(1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세부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조정 가능

※ 교육훈련 우선선발 시 1개월 이상의 장기교육훈련 제외

※ 특별휴가 선택 시, 연간 5일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제5항)

2 과정 중심 적극행정 참여 유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성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적극행정 실천 및 실행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수시적인 보상 체계 마련

□ 참여형 우수사례 발굴

- 2026년 강화군 주니어보드+를 통해 자유롭고 일상적인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밀착형 과제 도출 및 지역사회 소통 플랫폼 역할 수행

3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소소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 마일리지 제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6년 8월 ~ 12월

*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시행

- (대 상) 강화군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 (강화군의회 제외)
- (소요예산) 2,450천원
- (운영방법) 공무원 개인 신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인출

□ 마일리지 적립

- 8개 평가항목, 항목별 1 ~ 5점 부여

※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1.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추천 2.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제출	2점	⑤ 적극행정 설문참여	적극행정 관련 설문조사 참여	1점
② 중앙부처 적극행정·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대통령상(기관상) 수상	5점	⑥ 적극행정 추천사례	적극행정 추진으로 추천받은 사례 ▶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추천합니다' 게시판	1점
	국무총리상(기관상) 수상	4점			
	장관상(기관상) 수상	3점	⑦ 적극행정 성과홍보	적극행정 성과 홍보 (보도, 기고, 방송 인터뷰 등) ▶ '적극행정' 키워드 언급 필수 ▶ 연간 최대 4점 부여, 기안자 한정	1점
	인사처장상(기관상) 수상	2점			
③ 적극행정 의견제시 요청	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2점	⑧ 적극행정 교육수료	1. 적극행정 대면교육 수료 2.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수료 ▶ 연간 교육방식별 최대 각 1점씩 부여	1점
④ 사전컨설팅 신청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	2점			

□ 보상기준

- 점수대별 보상 부여

점수	보상항목
5점	온누리상품권 5만원
8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10점	온누리상품권 15만원

□ 검증 및 평가(마일리지 평가단)

- (추진시기) '26. 12월 중
- (평가단) 법무담당, 조직·예산·평가·인사 업무 담당자(5명)
- (내용)
 - 마일리지 운영현황 검증·평가 및 이의신청 결정 등 논의
 - 마일리지 제도 추진 결과 시행상의 중요 사안·문제점 등을 논의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

□ 운영계획

- ('26. 7월)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26. 8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홍보
- ('26. 12월) 마일리지 평가단 검증 및 평가
- ('27. 1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적 제출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구상권 행사, 민·형사상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활성화
-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고려, 구상권 행사를 제한

□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징계 절차 소명 신규

◆ 근거 규정 : 「강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6. 4. 17. 제정하여 신규 시행

○ (적용원칙)

- 군수는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퇴직공무원 포함) 징계의결·수사 단계 및 소송 수행 등의 경우 지원을 해야 함

○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 소명	- 2백만원 이하
형사 고소·고발로 기소 전 수사 단계	- 1천만원 이하(수사절차 진행 단계별)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 민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심급별) - 형사: 1천만원 이하(심급별)

※ 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은 기 지급된 소송비용 반환

-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 강화군 직원 책임보험 운영

- (가입대상) 공무원 및 공무원직
- (보장기간) 2026. 1. 1. ~ 2026. 12. 31.
 - 보험기간 이전이라도 소급담보일('15. 1. 1.) 이후 수행 직무도 보장
- (보장내용) 피보험자 1인당 연간 4건의 보험사고(총 1.2억원)까지 보장

구					분		주		요		내		용	
보 장 범 위	민사	경과실		변호사 선임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소송비용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형사사건은 수사 1,000만원, 1심 1,500만원, 2심 800만원, 3심 700만원 한도
- 민원담당 직무 관련 형사사건은 수사 1,000만원, 1심~3심 각 1,000만원 한도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중대범죄 죄목, 성범죄 등은 보장 제외

□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 근거 규정 :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지원내용)
 - 강화군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 근거 규정 :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기소되었거나, 피소·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공무원
- (지원내용)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원범위)
 - 각 심급마다 1,000만원 범위
 -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및 기 지급된 소송비용 반환

2

사전컨설팅 활성화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념 및 효력

- (개 념)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 감사 기구나 감사기관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제도
- (효 령)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감사단계), 징계의결등 면제^(징계단계)

*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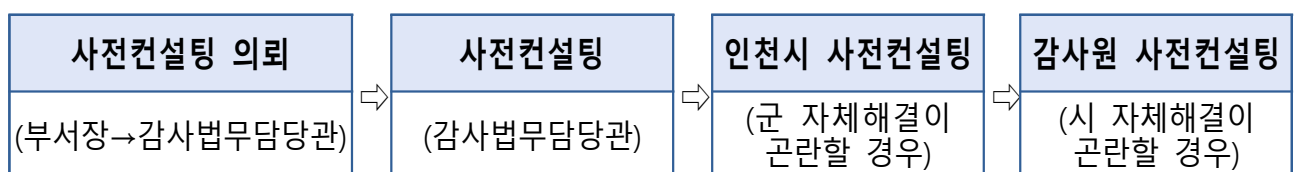
□ 운영 개요

- (주관부서) 감사법무담당관
- (신청기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신청대상)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업무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 제 외 대 상 >

-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 받은 사항
-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 ▶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 등

□ 처리절차



□ 활성화 방안 2026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법무담당관-602(2026. 1. 15.)호]

-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현장 상담창구’ 운영
- 읍·면 순회 사전컨설팅 안내 실시(2026년 9개 읍·면 홍보 예정)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교육’ 실시 및 2026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업무 협의 실시(인천광역시 감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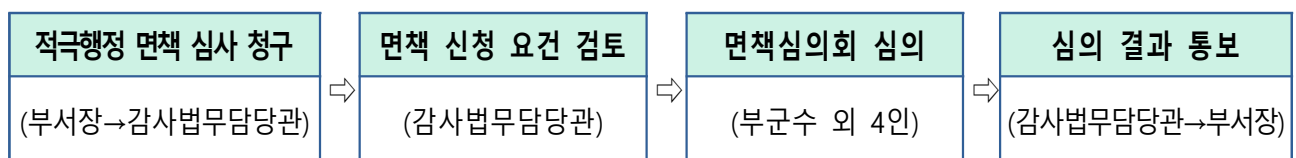
3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및 징계 등 면제

- ◆ 근거 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 제33조 ~ 제44조
「강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면책 제도

- (개 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신청 대상) 강화군, 읍·면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등
- (면책 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 (면책 제외)
 - 금품을 받은 경우, 고의·중과실·직무 태만인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처리 절차)



□ 징계의결 등 면제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및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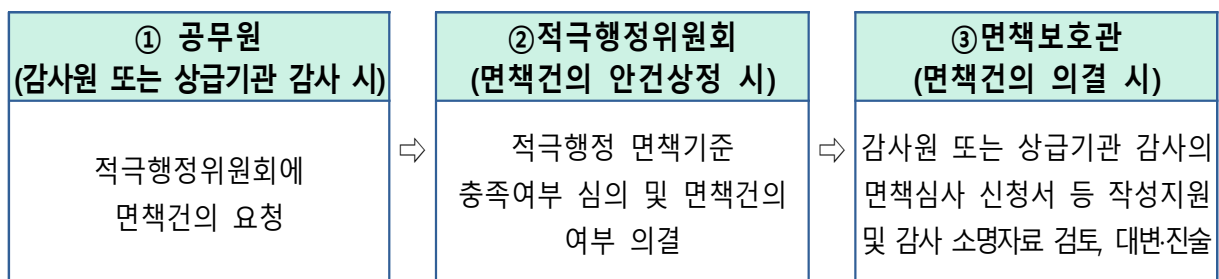
- (개 요)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요 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 공익 증진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업무 방식이나 절차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을 긴급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나 사회 통념상 적법한 처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웠던 경우

□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운영

- (보호관 지정) 감사법무담당관

※ 「강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지원 대상)
 -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 단, 자체감사기구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역 할)
 -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 상담·지원
 -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소명자료) 제출 전 자료 검토·자문 등
- (절 차)



V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 적극행정 교육 강화

- (교육대상) 강화군 전 직원 ※ 필요 시 공공기관 포함
- (교육내용) 적극행정 이해·관심도 향상, 우수사례 공유, 제도 활용 등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교육방법)
 - 직장교육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 활용 교육 추진('26. 11월 예정)
 - 군수 등 간부공무원 참여를 통해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확산
 - 온라인 교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과정 활용
 - 전 직원이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
- (이수관리) 부서별 적극행정 교육 이수율 점검 및 이수 독려

□ 적극행정 제도 활용 우수사례 홍보

- (강화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적극행정 홍보·소통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추천된 사례가 우수공무원 선발 및 사례 홍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 적극행정 ON 홈페이지 기관 우수사례(카드뉴스 등 활용) 게시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카드뉴스, 소식지, 리플릿, SNS(강화군 카카오톡 채널) 등 활용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제도 홍보

2 군민 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 2026년 강화군 주니어보드+ 활용

- 2026년 강화군 주니어보드+를 통해 자유롭고 일상적인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젊은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비효율적 절차, 군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행정 과제로 발굴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및 국민신청제 운영

- 기존 민원·제안 제도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연계
- 필요 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법령해석 등을 활용하여 군민 불편 해소 추진

3 적극행정 공감 형성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군민 평가 실시

- (군민 추천) ‘적극행정 ON’ 사이트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상시)
- 우수공무원 선정 과정에 군민투표 점수 반영(2차 심사)
 - 심사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군민 투표
 - 결과활용: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게시판 활성화

- 적극행정 홍보·소통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군 및 적극행정 ON 홈페이지 기관 우수사례(카드뉴스 등 활용) 게시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활용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행정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사회 소통 플랫폼 역할 수행
- 행정 내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군민 생활불편, 지역 현안, 규제애로 사항을 군민 관점에서 발굴

VII

소극행정 예방 및 효과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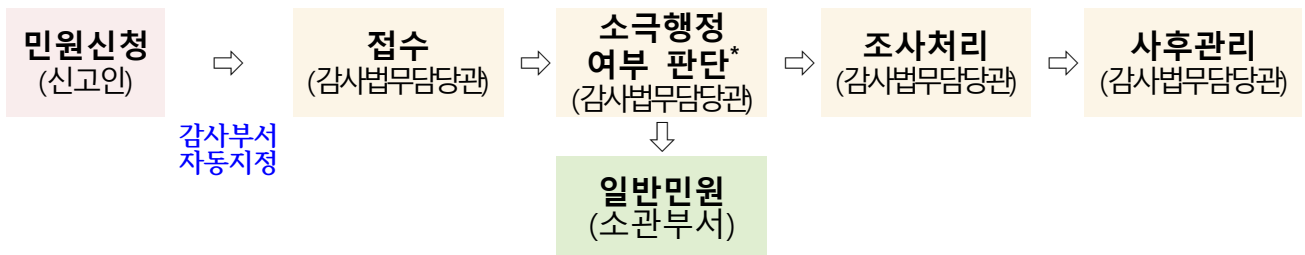
□ 개 념

- (소극행정)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태만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엄정 조치

- (신 고 자)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
- (신고방법) 신고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처리절차 및 소관부서) 감사법무담당관



*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 처리할 수 있음

○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 소극행정이 확인된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6개월 가산 적용, 징계 미감경(상훈 미감경) 등 엄정 처분

2

소극행정 점검 강화

□ 소극행정 수시 점검 시행

- 고질·반복민원, 처리지연, 부작위,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행태 집중 점검

□ 악성 상습 사례 엄정 조치

- 반복적·상습적 소극행정 사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직원 교육, 관리자 책임 강화 병행

□ 법령 제도상 불합리한 사례 제도 개선 병행

VIII

향후 계획

□ 부서별 추진 사항

추진 과제	일정	소관 부서
1. 적극행정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6. 6월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연 중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전 부서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26. 8월~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26. 8월~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26. 12월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26. 12월	총무과(행정팀)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송수행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연 중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총무과(총무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연 중	감사법무담당관(감사팀)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및 징계 등 면제	연 중	감사법무담당관(감사팀)
4.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실시	’26. 11월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군민 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연 중	
○ 적극행정 공감 형성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	연 중	
5.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엄정 조치	연 중	감사법무담당관(청렴팀)
○ 소극행정 점검 강화	연 중	

끝.